일반논평 5: 장애인

1. 국제사회는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하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핵심적 중요성을 강조해왔다.[1] 따라서 1992년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과 유엔장애인10개년 이행에 대한 유엔사무총장의 검토는 “장애가 경제적 및 사회적 요소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세계 대다수 지역에서의 생활 여건이 극히 절망적이기 때문에 모든 이에 대하여 기본적 필요(식량, 식수, 주택, 건강보전, 교육)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계획의 토대가 되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2] 비교적 생활수준이 높은 국가의 경우에도 종종 장애인들은 동 규약상 인정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기회를 부인당하고 있다.

2. 유엔총회[3]와 인권위원회[4]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와 그 전신인 실무그룹에 대해 장애인이 해당 권리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 규약상 당사국의 의무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감시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해 왔다. 하지만 본 위원회의 경험에 따르면 당사국은 자국의 보고서에 동 쟁점에 대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대부분의 정부의 경우 아직도 장애인의 실상을 실효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결정적이고 협력적인 조치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유엔사무총장의 결론과도 일치하는 듯하다.[5] 따라서 장애인 관련 쟁점을 동 규약상 포함되어 있는 당사국의 의무와 연계하여 부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강조함이 적절하다.

3. 아직까지 “장애”라는 용어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수락되는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의 목적상 1993년 기준규칙에서 채택된 다음과 같은 장애인에 대한 접근 방식만을 따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 “‘장애’라는 용어는 어떠한 인간에 대해 나타나는 서로 다른 수많은 기능적 한계를 축약하고 있다.… 사람들은 육체적, 지적 또는 감각기관에 대한 손상 또는 육체적 질병 또는 정신 질환으로 장애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해, 질병 등은 성질상 영구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다.”[6]

4. 기준규칙에서 채택한 장애인에 대한 접근방식에 따라 본 일반논평은 장애인에 해당하는 단어로 이전에 사용하던 “장애자(disabled persons)”라는 용어보다는 “장애인(persons with disability)”을 사용한다. “장애자(disabled persons)”라는 용어는 한 인간으로서 기능하는 개인의 능력에 장애가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5. 동 규약이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 자유롭고 동등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동 규약의 규정 또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장애인도 명백하게 동 규약에서 인정되고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릴 권한이 있다. 또한 특별대우가 필수적인 한 당사국은 동 규약에 특정되어 있는 권리의 향유 측면에서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인 개개인이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 더욱이 권리가 특정 배경이나 “다른 지위”에 기초한 유형의 차별 없이 행사될 것이라는 동 규약 제2조 2항 상의 요건은 장애를 근거로 하는 차별에 명백히 적용

된다.

6. 동 규약상 암묵적인 것이 아닌 명시적으로 장애에 관련된 규정이 누락되어 있는 이유는 동 규약의 초안을 작성하던 약 25년 전에는 동 사안을 암묵적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다룰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국제인권규약은 본 사안을 특정하여 다루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23조), “인권 및 인민의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제18조 4항),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분야의 인권에 관한 미주협약 추가의정서”(제18조)를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특정적으로 고안된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법, 정책, 계획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촉진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수락되고 있다.

7. 이러한 접근방식에 따라 국제사회는 다음 문서들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지를 확인했다.

(a) 장애의 예방, 재활과 장애인의 사회생활, 사회 발전에 대한 완전한 참여 및 평등의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틀을 제공하는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7]

(b) 1990년에 채택된 장애에 관한 국가조정위원회 또는 유사 기구의 설립 및 발전에 대한 지침[8]

(c) 1991년에 채택된 정신질환자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원칙[9]

(d) 비장애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장애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1993년에 채택된 장애인의 기회균등화에 관한 기준규칙 (이하 '기준규칙')[10]

이 중에서도 기준규칙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동 규약에 의거한 당사국의 해당 의무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지침이 되고 있다.

1. 당사국의 일반적인 의무

8. 유엔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5억 명 이상의 장애인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 가운데 80%가 개발도상국 외곽지역에 살고 있으며 70% 정도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한당하거나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현실을 개선하는 것은 모든 규약 당사국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방법은 불가피하게 국가마다 다르지만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등의 노력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국가는 없다.[11]

9.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해당 권리의 점진적 실현을 촉진시켜야 할 동 규약상 당사국의 의무는 단순히 장애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삼가는 것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취약하고 불리한 지위에 있는 집단의 경우에 있어 당사국의 의무는 모든 장애인에 대하여 사회내의 평등과 완전한 참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적인 불이익을 감소시키고 장애인에게 적절한 호혜적인 대우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는 당해 목적을 위해 복지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자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광범위한 맞춤형 조치가 요구된다는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10. 유엔사무총장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과 개도국에서의 지난 10년간의 발전상은 장애인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불리해져 왔다.

> "낮은 성장률, 고실업, 공공지출 감소, 현재의 구조조정 프로그램, 민영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의 악화는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현재의 부정적인 추세가 계속된다면 장애인은 점점 임시적인 지원에 의존

하는 사회의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게 될 위험이 존재한다."[12]

위원회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일반논평 3 (제5회기, 1990) 제12항) 사회의 취약 계층을 보호해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는 심각한 자원 제약 시기에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11. 시장에 기반한 정책에 대한 세계 각 정부의 점증하는 의지를 감안할 때 이러한 맥락에서 당사국 의무의 특정 측면의 강조는 적절하다. 한 가지 측면은 적절한 한도 내에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도 적정 한계 이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형평한 대우를 보장하는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약정이 점차 민영화되고 있고 자유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간부문의 직원, 민간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 공급자 및 기타 공공성을 띄지 않는 주체 등도 장애인과 관련한 비차별 및 평등의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호조치가 공공 부문에만 한정된다면 장애인이 공동체 활동의 주류에 편입하여 사회의 적극적인 일원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은 심각하게, 때로는 자의적으로 제한당할 것이다. 이는 민간부문에서 차별을 폐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입법 조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가령 기준규칙은 당사국이 장애인과 장애인의 권리, 요구, 잠재력, 사회 공헌도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13]

12.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자유시장의 작동이 장애인에 대하여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항상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장의 힘에 의한 결과를 완화하고 보완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애인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나 자선단체에 의존하는 동시에 이러한 민간부분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도 적절하나, 이러한 방식이 동 규약 하의 완전한 의무 이행을 보장해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로부터 당해 정부를 면제시킬 수는 없다. 장애인에 대한 세계행동계획은 "장애를 유발하는 여건을 치유하고 장애에 의한 결과를 관리해야 하는 책임은 최종적으로 정부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4]

2. 이행 수단

13. 당사국이 장애인에 대한 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다른 의무의 이행에 있어 이용가능한 방법과 동일하다(일반논평 1 (제3회기, 1989) 참조). 이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당해 국가 내 존재하는 문제점의 특성과 범위를 확인할 필요성, 이렇게 확인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식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도입할 필요성, 필요한 경우 법안을 제정하고 현재의 차별적인 법안을 폐지할 필요성, 적절한 예산 제공이나 필요한 경우 국제적인 지원이나 협조를 요청할 필요성 등을 포함한다. 동 규약 제22조와 제23조에 따르면 국제 협력은 일부 개발도상국이 규약상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14. 또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분야에 있어 정책결정과 프로그램 시행이 관련된 대표 집단과의 충분한 상의와 이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인식하여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준규칙은 장애인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국가조정위원회 또는 유사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

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해 정부는 1990년 장애에 대한 국가조정위원회 또는 유사 기구의 설립 및 발전에 대한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15]

3. 장애에 근거한 차별 철폐 의무

15. 장애인에 대한 법적(de jure) 및 사실상(de facto)의 차별은 오래 지속되어 왔고 여러 형태를 띠고 있다. 교육의 기회 박탈과 같은 명백한 차별에서부터 물리적, 사회적 장벽의 부과에 의한 소외와 격리와 같은 더욱 "미묘한" 형태의 차별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의 차별이 있어왔다. 동 규약의 목적을 위하여 "장애에 근거한 차별"은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정, 향유 또는 그 행사를 무효화하거나 저해하는 효과를 갖는 차별, 배제, 제약이나 특혜, 장애로 인한 특정시설 사용 금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배제, 차별, 분리뿐만 아니라 무시, 무지, 편견, 그릇된 가정을 통해 장애인들은 종종 비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를 근거로 하는 차별의 효과는 특히 교육, 고용, 주택, 교통, 문화생활, 공공장소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의 분야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16. 지난 10년간 입법적 측면에서는 다소 진전을 보였지만[16], 장애인의 법적 상황은 아직도 불안정하다. 과거와 현재의 차별에 의한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발생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모든 당사국에서 장애와 관련된 포괄적인 차별금지에 관한 입법이 필수 불가결하다. 이러한 입법을 통해 장애인은 적절하고 가능한 한 폭넓은 사법적 구제를 보장받게 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되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가능케 하는 사회정책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

17. 비차별 조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의 문언과도 같이, 이러한 평등원칙은 사회 모든 구성원의 요구는 모두 동등하게 중요하며, 이러한 요구들은 사회적 계획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모든 자원은 사회구성원이 동등한 사회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이 공동체의 모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17]

18. 기존의 차별을 보정하고 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이러한 행동이 평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본래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취해지는 경우 상기조치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2조 2항 상의 의미에 따라 차별적인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4. 동 규약의 특정규정

A. 제3조: 여성과 남성에 대한 평등권

19. 장애인의 경우 때로는 성별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이중적인 차별이 간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18] 국제사회에 의해 빈번하게 제기되는 여성장애인의 상황에 대한 특별한 강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지난 10년간 거의 아무런 노력도 기울여지지 않았다. 세계행동계획 이행에 대한 유엔사무총장의 보고서에서도 장애 여성에 대한 간과의 문제가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19] 따라서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향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련된 프로그램 시행에 있어서 장애 여성의 상황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B. 제6조-제8조: 근로관련 권리

20. 고용부문은 장애를 기반으로 하는 차별이 가장 두드러지면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진 부분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애인의 실업률은 비장애인 실업률의 두세 배에 이른다. 장애인이 고용이 된 경우에도 이들은 대부분 사회적, 법적 보장이 되지 않는 저임금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류 노동시장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국가는 장애인이 정규 노동시장에 통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21. 장애인에게 열려있는 실질적 기회가 기준 이하의 작업 여건에 있는 소위 사회(복지)시설에 고용되는 것이라면 "모든 이의 자유롭게 선택 또는 수락한 직장에서 생계를 해결할 기회에 대한 권리"(제6조 1항)는 실현될 수 없다. 일정한 범주의 장애인의 직업을 특정 직업이나 특정물품의 생산으로 한정하는 것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자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원칙[20] 제13조 3항 상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강제노동에 해당되는 시설에서의 의학적 치료도 동 규약과 양립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노동 금지 조항도 동 조항과 잠재적 연관성이 있다.

22. 기준규칙에 따르면 도시나 지방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자도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21]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 사회통합 특히 고용에 대한 인위적인 장벽을 철폐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노동기구가 지적하듯이 장애인의 고용을 막고 있는 것은 교통, 주거, 직장 등의 영역에서 사회가 쌓아놓은 물리적인 장벽인 경우가 대부분이다.[22] 예를 들어 직장에 휠체어가 다닐 수 없다면 고용주는 휠체어 사용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당화시키려 할 것이다. 정부는 장애인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대안적인 고용계약을 촉진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23. 마찬가지로 정부가 장애인이 원활하게 교통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이 필요한 직장을 구하고, 교육과 직업교육을 누리거나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당부분 박탈하는 것이 된다. 실제로 장애인이 동 규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실제로 모든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의 교통수단을 제공해야만 할 것이다.

24. 동 규약 제6조 2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술적, 직업적 지도와 교육 프로그램"은 모든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고 통합된 사회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인 대표의 완전한 참여 속에 계획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25. “정당하고 호혜적인 근로환경을 누릴” 권리(제7조)는 장애인들이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하든지 또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장애 근로자의 작업수준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경우 임금이나 다른 근로조건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금지되어 있다. 당사국은 노동력 보호에 대한 기준을 낮추거나 최저 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장애를 구실로 삼지 않을 것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26. 노동조합관련 권리(제8조)도 모든 장애인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며, 장애인 근로자가 특수 근로시설에서 일하든지 또는 일반 노동시장에 고용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장애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또한 단결의 자유 등 여타 다른 권리와 연계시켜보면 제8조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그들만의 조직을 구성할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이 장애인 근로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고 보호(제8조 1항(a))“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해 조직은 또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하여 정부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과 정기적으로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 이러한 의견 교환은 또한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또는 여타 방법의 지원을 통해 그 조직의 자생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있다.

27. 국제노동기구는 장애인의 직업적 재활 및 장애인 고용에 대한 특별 협약 제159호(1983) 등 장애인의 근로 관련 권리를 위한 포괄적이고 가치 있는 협정을 개발해왔다.[23] 본 위원회는 동 규약 당사국들에게 상기 협약에 대한 비준을 장려하고 있다.

C. 제9조: 사회보장

28. 사회보장과 소득보존계획은 장애인에게는 특히 중요하다. 기준규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는 장애나 장애관련 요인으로 인해 소득이 일시적으로 상실되었거나 줄어든 경우 또는 고용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소득을 지원을 보장하여야 한다.”[24] 이러한 지원은 장애와 관계된 지원의 필요성과 기타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가능한 한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대개의 경우 여성 보조원)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장애인 가족 구성원을 포함해서 장애인 보조인은 그들의 보조 역할로 인해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가 많다.[25]

29. 특정 이유로 인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을 공공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보장 및 소득지원권의 적절한 대체 수단이 될 수 없다.

D. 제10조: 가족, 모성과 아동 보호

30. 장애인의 경우 가족에게 “보호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본 규약의 요구는 장애인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신의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 규약 제10조 또한 국제인권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장애인의 결혼할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함축하고 있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종종 이러한 권리가 무시되거나 부인되고 있다.[26]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이라는 용어는 적절한 지역적 용법에 따라 광범위하게 해석해야 한다. 당사국은 법, 사회정책 및 정책실행이 이러한 권리실현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은 가족 내에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27]

31. 장애 여성은 모성 및 임신과 관련하여 지원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기준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본인의 성적 역할과 성관계, 부모로서의 역할을 누릴 기회를 박탈해서는 아니 된다.”[28] 이러한 요구와 욕구는 출산과 오락 모두의 관점에서 인정되고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전 세계 장애 여성과 남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인되고 있다.[29] 장애여성의 사전 동의 없는 강제불임이나 강제낙태는 동 규약 제10조 2항의 심각한 위반이다.

32. 장애 아동은 특히 착취, 학대, 무관심에 취약하며 동 규약 제10조 3항(이에 상응하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규정에 의해 그 효력이 가중되는)에 의해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한이 있다.

E. 제11조: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33. 장애인의 적절한 음식, 주거, 기타 기본적인 물질적 요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성과 더불어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스스로 일상생활에서의 자립수준을 제고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보조제도 등의 지원 서비스"도 필수적이다.[30] 실효적이고 완전하게 사회생활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의복에 대한 권리도 특별한 의복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인적 지원도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해당 장애인의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는 방법과 정신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일반논평 4의 제8항에서 본 위원회가 지적한바와 같이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장애인이 확보 가능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F. 제12조: 신체적 및 정신보건에 대한 권리

34. 기준규칙에 따르면 "국가는 장애인, 특히 유아와 아동에게 동일한 체제 내의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31]고 규정하고 있다. 신체적 및 정신 보건에 대한 권리는 정형외과의 교정기구 등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의료 및 사회적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 또한 함축하고 있다.[32] 이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가장 적정한 수준의 독립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고 유지"[33]할 수 있도록 재활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서비스는 관련 당사자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충분하게 존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G. 제13조 및 제14조: 교육에 대한 권리

35. 오늘날에는 많은 국가의 학교 프로그램은 장애인은 일반교육체제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34] 따라서 기준규칙은 "국가는 장애 아동.유소년.성인의 초등.중등.고등 교육에 대한 동등한 기회의 원칙을 인정하여야한다"[35]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규학교에서 장애 아동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를 훈련하고 장애 아동이 비장애 아동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와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청각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당해 아동이 사용해야 하고 전반적 사회 환경 속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하는 수화가 별도의 언어로 인정되어야 한다.

H. 제15조: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과학적 진보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

36. 기준규칙은 "국가는 장애인이 자신의 창조적, 예술적, 지적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장애인 본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도시와 농촌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국가는 문화공연과 서비스를 위한 공간의 가용성과 접근성 확보를 촉진해야 한다.…"[36] 이는 여가 및 스포츠 공간, 여행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7. 나아가 장애인의 문화.여가 생활에의 완전한 참여에 대한 권리는 의사소통의 장벽을 최대한 철

폐할 것을 필요로 한다. 이런 측면에서 유용한 수단들은 “음성이 나오는 책, 쉬운 언어로 쓰여지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명확한 형식과 색상의 인쇄물,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조정된 TV와 극장의 활용”[37]등을 포함한다.

38. 장애인의 문화생활에 대한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에 대하여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미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간질을 귀신이 들린 것으로 보거나 장애아동을 그 집안에 대한 저주로 보는 인식 등을 불식시켜야 한다. 마찬가지로 일반대중도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식당, 호텔, 여가시설, 문화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주(註)

[1] 본 사안에 대해 포괄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인권과 장애에 대해 특별 보고관 Mr. Leandro Despouy가 작성한 최종 보고서 참조 (E/CN.4/Sub.2/1991/31).

[2] A/47/415, 제5항 참조.

[3] 1982년 12월 3일 결의 37/52호를 통해 유엔총회가 채택한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 제165항 참조.

[4] 인권위원회 결의 1992/48호 제4항 및 1993/29호 제7항 참조.

[5] A/47/415, 제6항 참조.

[6] 1993년 12월 20일 유엔총회 결의 48/96호 부속서, 장애인에 대한 기회균등화에 관한 기준규칙 (도입, 제17항) 참조.

[7]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 (위의 주석 3 참조), 제1항.

[8] A/C.3/46/4 부속서 Ⅰ. 1990년 11월 5일-11일 사이 베이징에서 열린 개발도상국의 장애에 대한 국가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국제회의에 관한 보고서에도 포함. 유엔총회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1991/8호 및 1991년 12월 16일 유엔총회 결의 46/96호 참조.

[9] 1991년 12월 16일 유엔총회 결의 46/119호 부속서.

[10] 기준규칙 (주석 6 참조), 서론, 제15항.

[11] A/47/415호 전반적으로 참조.

[12] 위의 문서., 제5항.

[13] 기준규칙 (주석 6 참조), 규칙 1.

[14]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 (주석 3 참조), 제3항.

[15] 주석 8 참조.

[16] A/47/415, 37-38항 참조.

[17] 장애인에 대한 세계행동계획 (주석 3 참조), 제25항.

[18] E/CN.4/Sub.2/1991/31 (주석 1 참조), 제140항 참조.

[19] A/47/415, 제35, 46, 74, 77항 참조.

[20] 주석 9 참조.

[21] 기준규칙 (주석 6 참조), 규칙 7.

[22] A/CONF.157/PC/61/Add.10, 12쪽.

[23] 장애인의 직업적 재활에 관한 권고 제99호(1955), 장애인의 직업적 재활과 고용에 관한 권고 제168호(1983) 참조.

[24] 기준규칙 (주석 6 참조), 규칙 8, 제1항.

[25] A/47/415, 제78항 참조.

[26] E/CN.4/Sub.2/1991/31 (주석 1 참조), 제190, 193항.

[27] 장애인에 대한 세계행동계획 (주석 3 참조), 제74항 참조.

[28] 기준규칙 (주석 6 참조), 규칙 9, 제2항.

[29] E/CN.6/1991/2, 14항 및 제59-68항 참조.

[30] 기준규칙 (주석 6 참조), 규칙 4.

[31] 위의 문서 규칙 제2, 3항.

[3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 참조 (1975년 12월 9일 유엔총회 결의 3447 (XXX)호) 제6항 및 장

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 (주석 3 참조) 95-107항 참조.

[33] 기준규칙 (주석 6 참조), 규칙 3.

[34] A/47/415, 제73항 참조.

[35] 기준규칙 (주석 6 참조), 규칙 6.

[36] 위의 문서, 규칙 제10, 1-2항.

[37] A/47/415, 제79항.